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모델로서*

윤 여 상** · 이 건 호***

- | | |
|------------------|------------------------------|
| I. 머리말 | IV.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립의
의미 |
| II.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 | V. 결 론 |
| III.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 | |

Abstract

The Meaning of “the Central Archiving Center against Illegal Activities” at the Sociality Unity Party in Germany at Viewpoint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odel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aced with the limitation to carry forward a positive scheme agains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is is caused b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hould consider bo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rough “the Peace & Prosperity Policy (Sunshine Policy),” and current situation of mutual assistance among the surrounding countries connected with the interests.

The Central Archiving Center against Illegal Activities in Germany, which had per-

formed the mission of record preservation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r refugees from East Germany until the unification, is a valuable model to deal with the matte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for Refugees from North Korea w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refugees as well as for the prevention of this kind of violations thereafter.

Key Words: Peace & Prosperity Policy, Refugees from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 Human rights Violation Archiving Center,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15).

** 북한인권센터 소장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I. 머리말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조선 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10월 17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대북 경제적 제재의 강화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되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주민의 탈북사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우리에게 통독이전 동독난민의 엑소더스 문제와 유사한 고민이 놓여있다.

이미 북한에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주민의 이탈행렬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국가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다.¹ 그리고 그 만큼 그들은 여러 형태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반 인권적인 취급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² 따라서 심각한 탈북자의 문제, 특히 그들의 인권침해적 고통사례는 미확정적인 통일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상황에서 형사소추의 현실적 불가능은 우리로

¹ 주섭일, “베를린장벽 붕괴 15주년, 휴전장벽에 주는 교훈: 동독 엑소더스 대담한 수용과 곁도는 탈북자 문제,” 『자유공론』 (2004.11), p. 50. 참조

²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가난과 기아 등에 의한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형벌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김부찬·김하룡,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재중 탈북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6권 제2호 (2006.2), p. 28)참조. 더욱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진작부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윤여상, “탈북자의 인권<토론>,” 『인권과정의』, Vol. 317, 2003.1, pp. 51~55). 특히 중국 정부는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으로부터 생존적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살길을 찾아 탈북한 수십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부와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것과 같은, 대국의 체통에 맞지 않는 비 인도주의적 수치스러운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대륙전략』 제2호 (2004.9), pp. 220~221). 실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였으나 북한요원들에 의한 체포나 강제송환을 피해 숨어살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거나 매춘 혹은 성노예상태로 빠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혹은 돈을 벌기위해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중국당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구금·고문은 물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김영신,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락같은’ 북한 인권상황<HRW 2005 인권보고서>,” 『통일한국』 (2005.2), p. 36).

하여금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에 따른 남북관계개선과 국제적 협력의 틀 속에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과의 공조, 특히 한미공조라는 대립적 구조는 참여정부의 인권문제에 명쾌한 입장표명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손 놓고 볼 수는 더더욱 없다.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적이고 능동으로 강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는)수동적일지라도 의미 있는 해결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적어도 통독되기까지 동독탈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보존을 임무로 한 독일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는 탈북자의 인권침해문제의 적절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통독과정에서 독일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의미를 살펴보면 동 보존소가 인권침해의 개선·방지에 가지는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이하 중앙기록보존소)³의 설립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준비를 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통일과정에서 중앙기록보존소가 담당한 주요임무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이 서독으로 향한 동독탈주자에게 저지른 인권침해행위를 기록·문서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동독탈주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보존을 통하여 탈주과정에서 발생한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에 가로놓인 철조망에서의 총격, 지뢰, 자동발사장치로 인한 동독탈주자의 죽음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가치는 단순히 동보존소의 업무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중앙문서보관소의 설립은 동독의 체제집권자에게 그들의 인권

³ Zentrale Erfassungsstelle는 ‘중앙범무기록보존소’(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1995), p. 155) 또는 ‘중앙범죄기록소’, ‘잘츠기터기록소(김문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자,” 『월간조선』, 26권 9호 통권 306호 (2005.9), p. 189)라고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논문의 성격에 적절하게 이 기관의 이름을 그 특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라고 번역하고서 이하에서는 편의상 단지 ‘중앙기록보존소’라고 한다.

침해행위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동보존소의 존재는 아울러 인권침해행위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통독 후에) 그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독일국민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써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일국민의 확고한 통일의지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앙기록보존소는 통독이전에도 인권침해행위를 개선·방지케 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독 후 보관된 문서들은 동독탈주자의 인권침해사안과 더불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를 묻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비록 중앙기록보존소가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지수단을 찾는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보기 힘들겠지만, 수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인권침해의 개선과 중지압박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렇게 보면 현재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참여정부에게 인권침해방지의 일환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존재는 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기록보존소가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모델로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설립배경, 업무내용과 업무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당위성과 어떻게 기능을 하였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에서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보존소의 인권보호적 의미와 통독과정에서 어떠한 기여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는 중앙기록보존소가 왜 참여정권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에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모델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탈북자의 인권침해행위 기록보존소의 설립된다면, 이에 따른 탈북자의 인권침해 방지·개선 효과와 이에 따른 기대가능한 통일추진효과를 생각해 본다.

II.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이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동보존소가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동 보존소의 업무내용을 분석해보고 또한 업무방식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다.

1. 설립배경

중앙기록보존소의 인권보호적 성격은 그 설립배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잘츠기터에 위치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역사는 탈동독행렬을 막기 위하여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이하 동독)에서 ‘반파시스트 보호벽’이라고 불렀던 베를린 장벽의 건설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에 동독정부가 진정한 인민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건국되었다. 하지만 많은 동독주민들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에 등을 돌리고 서독으로 향하였는데, 1950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까지 이탈자 수는 최소 256만 명에 달하였다.⁴ 따라서 탈동독 행렬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동독정부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동독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주민에게 비할 수 없는 잔인한 반응을 보였다. 1961년 8월 13일에서 1989년 11월까지 186명의 동독인이 목숨을 걸고 동독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중 많은 수가 병사들에게 사살 당하였거나 또는 자동발사장치와 지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동독에서 탈주를 시도한 주민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정부가 동독의 붕괴와 주민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인권침해요소가 포함될 지라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동독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는 곧바로 (언젠가는) 소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공론화 되었다. 베를린 장벽의 축조이후 사살명령의 첫 희생자가 나온 뒤에, 서독 정치인들은 반드시 (또다른 이러한 사건의 방지를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나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와 인식을 같이하는 서독정치인들에 의하여 그러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되었다.⁵ 결국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행위를 기록·보존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로서 중앙기록보존소가 당시 동서독의 경계 지역인 잘츠기터에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백히 인권침해적이고 형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행위는 기록·문서화되게 되었다.

⁴ 최승완, “탈동독 행렬과 동독 사회주의의 붕괴,” 『역사비평』, 통권 65호, 2003 겨울, p. 251.

⁵ Sauer, Heiner · Plumeter, Hans-Otto,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Esslingen · Muenchen, 1991), p. 20.

2. 업무내용

가. 업무영역

중앙기록보존소의 명칭은 동보존소 역할에 비추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동독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문서화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법무행정기관이었다. 그런 만큼 중앙기록보존소의 임무는 차후에 형사소추에 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가치가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업무영역은 처음에는 단지 베를린장벽과 동서독 국경지대에서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되었다. 이후 1963년에 국내형법적용 규정상 기본원칙(die Grundsätze des interlokalen Strafrechts)에 근거해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폭력행위의 개념은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행위로 확대되었다가, 1968년에 이르러 폭력행위의 개념은 형사소추의 기준으로 인권침해행위여부가 문제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핵심적인 주요한 임무는 인권침해적 경우가 만연했던 동서독 국경에서 자행된 또는 시도된 살인행위, 정치적 이유에서의 부당한 판결, 수형자 집행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동독에서 강제납치(Verschleppung)와 정치적 박해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앙기록보존소는 통일이후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⁶

첫째, 동독지역에서 부활하게 된 5개주의 사법체제를 다시 구축함에 있어서 과거의 전력이나 행적여부에 따라 재임용절차를 거치고 있는 판·검사들의 선발기준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동독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복권 또는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당한 법원판결을 재심하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셋째, 정치적 폭력행위에 관여하였던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소추상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나. 살인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 임무의 확장과 함께 동독공산체제의 정책집행을 위하

⁶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법조』, 제40권 제3호 (1991.3), pp. 189~191.

여 정치적 이유로 법적인 절차 없이 자행된 인권유린적 살인·신체상해 및 자유박탈의 경우를 수집·기록하였고,⁷ 1968년 이 임무영역에 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또는 공산체제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살인 또는 살인기도행위를 포함시켰다.⁸

특히 동서독 국경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한 살인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그 행위의 문서화·보존은 중앙기록보존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가 벌어지는 이유로, 실제로 통독이전에 동서독 국경에서는 수많은 동독 시민들이 동독탈주과정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하여 총기와 지뢰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러한 탈주자를 사살하는 행위는 동독 정권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이었다. 그런 만큼 국경경비대의 총기사용은 항상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탈주자를 사살한 초병에 대한 형사소추는 통일될 때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탈주를 저지한 초병은 오히려 표창을 받거나 상금을 받기까지 하였다.⁹

한편 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화 근거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동독형법은 군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제9장에서 언급하였다. 제9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동독형법 제257조에서는 명령불복종과 명령불이행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제258조에서는 명령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원칙으로 하였다.¹⁰ 그리고 동독형법 제262조에 의하면 국경안전에 관한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였는데, 특히 제262조 1항에 의하면 국경경비대원이 국경안전에 대한 복무규정 또는 다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부 유죄판결이나 구금형에 처해졌다.

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에 대한 근거로, 차후 판례의 확고한 입

⁷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6.

⁸ *Ibid.*, p. 28.

⁹ 김성천, “통일전 동독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법정논총』, 제33권 통권 제47집 (1998.2), p. 54.

¹⁰ 제258조 (명령에 의한 행위) ① 명령의 수행이 승인된 국제법 규범 또는 형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 승인된 국제법 규범이나 형법이 하급자의 명령수행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명령을 하달한 상급자도 형사책임을 진다.

③ 명령수행이 승인된 국제법 규범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에서처럼 초실정법 또는 국제적 인권협약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기본원칙과 인간성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동독법에 의한 정당화는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¹¹ 이는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준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동독정부는 1973년 11월 8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국제인권협정)을 비준하였고 1974년 2월 26일 법률공보에 공포하였다.¹² 특히 국제인권협정 제6조에 의하면 “어느 누구의 생명도 자의로(Willkuerlich) 침해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근거했을 때 국경수비대의 총기사용을 정당화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안의 경우는 총기사용을 의무로 하고 있는 동독정권담당자의 비밀총기사용지침(geheime Schußwaffengebrauchsbestimmungen)은 이미 상당성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ßmäßigkeit)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비밀총기사용지침에 따른 국경수비대의 사격행위는 동독정부가 인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한 모든 경우를 소추가능한 범법행위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는 것을 정당하게 한다.¹³

다. 정치적 부당한 판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에 기록·보존할 범법행위로서 정치적 이유에서 인격존중과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게 적법하지 않게 과도한 형을 선고한 판결만을 포함시켰다.¹⁴ 그러나 1968년부터는 정치적 동기에서 말미암아, 기본적인 인격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 할 정도로 형이 과도한 불법판결 역시도 기록·보존하였다.¹⁵

중앙기록보존소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판결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선고에 그 불법

¹¹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법무자료, 제234집 (2000), pp. 68~69.

¹² 국제인권협정은 연방법원에 의하여 어떤 경우에 한 국가가 인류공통의 법적 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국제인권협정은 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에 대한 법적 재검토에 있어서 동독국경법과 동독 실무상의 위법성조각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국제인권협정은 구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법규범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위한 기준으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하겠다. 김성천, “행위시법주의의 원칙과 예외-동독 국경경비대 발포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법조』 (1995.7), pp. 92~93.

¹³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84.

¹⁴ *Ibid.*, p. 26.

¹⁵ *Ibid.*, p. 28.

성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되는 것은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독립성 문제에 따른 판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었다. 형식상 동독헌법 제86조에 의하면 정의, 평등, 동지에 그리고 인간적 삶의 정신의 실현은 동독헌법의 기본정신이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동독헌법 제96조에서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사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기란 쉽지 않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동독헌법은 판사에게 제한되지 않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독헌법 제94조에 의하면 판사는 국민과 사회주의 국가에 충실해야만 했고, 아울러 높은 정도의 학식과 삶의 경험 그리고 인간적 성숙도와 도덕적 엄격함을 가져야만 했다.¹⁶ 여기서 동독헌법 제95조에 의하면 판사는 선출되었거나, 이러한 판사의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해임사유가 되었다.¹⁷

그리고 동독헌법은 특정한 사안의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였다. 즉 동독헌법 제74조에 의하면 국가평의회는 인민회의의 위임에 따라 최고재판소와 검찰청의 행위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리고 동독헌법 제93조에 의하면 단일한 법적용이 모든 법정에게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동독의 최고재판소의 의무로 하였고, 제88조에 명시되었던 해명의무제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기관을 인민회의 내지 국가평의회로 하였다.

동독의 재판관의 물적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동독의 1400명의 직업 재판관의 인적 독립성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¹⁸

판사, 검사 그리고 선출된 변호사는 공공사용을 위하여 특정된, 즉 비밀유지가 필요한 동독 최고재판소의 정보를 단지 사회주의적 권리측면에서만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두 달마다 출간되었고 모든 견본에는 예를 들어 ‘문서 14와 15’와 같은 특정한 보관번호가 붙어졌다.

동독 재판관의 독립성의 약화에 해임가능성외에 이중적인 급료지불형태도 한 몫을 하였다. 판사에게 매달 기본급료가 1975년에 1000에서 1200마르크(Mark)이었고 1989년에는 1300에서 1600마르크 사이에서 지불되었다. 더불어 그들에게 당과 국가의 시책에 올바르게 따랐는지에 대한 성과급이 보장되었다. 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성과급은 1989년에 한달에 40에서 50마르크에 달했다.¹⁹

¹⁶ *Ibid.*, p. 111.

¹⁷ *Ibid.*, p. 111.

¹⁸ *Ibid.*, p. 112.

다음으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으로 부당한 판결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앙기록보존소는 매년,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이념이 문제가 되는 판결 중에서 정의와 불일치가 지나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중한 처벌을 결정하는 부당한 판결로서 무효인 판결로 제한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 정치적 판결로서, 주로 동서독간의 석방거래(Freigekauft werden)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범²⁰에 의하여 관련 진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석방대상은 주로 반체제운동을 하거나 동독을 불법으로 탈출하려다가 투옥된 사람 등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피박해자들에 국한하였으며, 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대상자였으므로 명단은 동독의 변호사나 검찰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입수될 수가 있었는데 1989년 11월의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전까지 연 33000건에 달하였다.²¹

한편 구류처분으로 끝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대다수가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록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²² 약 200000건의 동독정권의 정치적 판결이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되지는 않았다.²³

1990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부당한 판결은 30752건이었다. 하지만 이 건수는 중앙기록보존소가 여러 사람에게 대한, 예를 들어 부부, 친인척 또는 대모단체에 대한 판결을 하나의 사건기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수이다. 만약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범의 사건을 하나의 건수로 계산하지 않고 부당한 판결의 숫자로 계산했다면, 실질적인 부당한 판결의 숫자는 기록된 수의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을 것이었다.

라. 가혹행위

중앙기록보존소는 1963년에 이리러 소련점령지역의 정치적 억압체제에서의 가혹행위가 수사과정에서 자행되거나 또는 형사사법절차를 빙자하여 자행되고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자행되는 것을 수집·기록하였다.²⁴ 그 후 1968년

¹⁹ *Ibid.*, 112.

²⁰ 이들은 서독정부에서 비밀거래를 통하여 대가 지불하고 신병을 인수받은 정치적 수감자이다.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p. 181.

²¹ 위의 글, p. 181.

²²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113.

²³ *Ibid.*, p. 114.

에 중앙기록보존소 의미의 가혹행위를 ‘수사과정에서(im Ermittlungsverfahren)’ 자행되는 가혹행위에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während des Laufs von Ermittlungsverfahren)’ 자행되는 가혹행위로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²⁵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중앙기록보존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하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침해이었다. 동독정부는 정치범 역시 하나의 범법자로 평가하였고, 그래서 형집행시 일반범법자와 정치범을 구분하지 않았다. 중앙기록보존소의 통계에 따르면 1961년 이래로 동독 정부의 폭력정권의 상징처럼 된 신체상해가 625건 있었다. 게다가 어떠한 정치적 동기와 상관없이 정치범에 2000건의 가혹행위가 자행된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은 모든 형집행기관에 관련사실사항을 기록한 서류철이 비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혹행위는 비치된 서류철에 이 기록되었다. 이때 (가혹)행위자로 고려된 사람은 인명카드에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었다. 가혹행위의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서 동독감옥 내에서 매일같이 자행된 교도관의 수형인에 대한 구타가 정당화될 지는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기록보존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을 가혹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는 아니지만 무형의 가혹행위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민감한 관심을 두었다. 정치범의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적 가혹행위로서, 경찰에 또는 형집행시에 감금(유치) 상태에서 무법적인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고, 전혀 법적 수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종종 하루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독방에 수용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서서 잠을 자게 한다거나 불을 끄지 못하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조건과 전횡상태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마. 정치적 무고

중앙기록보존소는 형법 제220조 a의 민족모살(Völkermord), 제234조 a의 납치(verschleppung), 형법 제241조 a의 정치적 무고(politische Verdächtigung)의 범

²⁴ Ibid., p. 26.

²⁵ Ibid., p. 28.

죄행위 혐의가 있는 행위를 1968년부터 기록·보존하였다.

굳이 말한다면 중앙기록보존소는 그 존재성격을 두고 동서독 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특수한 형태의 첩보기관이 아닐뿐더러 조사기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독안전부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지도 기록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는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보존소 정치적 무고사안에 대한 기록은 기관자신의 필요적 임무라고 보았고, 실제로 행하였다.²⁶

그 이유로 동독정부의 동독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재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동독정부의 주민감시체제를 살펴보면, 동독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중의 하나가 체제에 불만을 가진 동독주민에 대한 감시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동독체제에 불만을 가질만한 공무원, 기업종사자, 대학과 학교에 있는 사람, 운동선수들에서 소정원소유자까지 감시하기 위하여 10,500명을 고용하였다.

감시방법으로 서신을 조사하고 전화를 도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감시하고 탈주계획을 적발하기 위하여 기관을 창설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밀리 활동하고 어떠한 민주적인 통제도 받지 않았던 동독의 국가안전부(MFS)였다.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40년간 존속해 오면서 9만여명의 정규직원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하였다.²⁷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보조종사자를 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정보제공자 및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동조하였던 밀고자를 포섭해나갔는데, 그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였다.

감시체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하면, 유감스럽게도 시민에 대한 시민의 고발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동독형법 제225조는 법적인 무를 부과하였다.²⁸ 그런데 동독형법 제225조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확장된 해석

²⁶ *Ibid.*, p. 205.

²⁷ 김성천, “통일전 동독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p. 57.

²⁸ 형법 제225조<고발의 부작위>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계획, 준비 및 실행에 관하여 그 행위의 종료 이전에 이를 인지한 자가 이를 지체없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공개비판에 처한다.
 1. 평화와 인간성에 대한 중죄(제85조 내지 제89조, 제19조 내지 제93조)
 2. 독일민주공화국에 대한 중죄(제96조 내지 제105조, 제106조 2항,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3. 생명에 대한 중죄(제112조, 제113조)
 4. 공공안전과 국가질서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8조, 제213조 2항 1호 내지 4호)
 5. 무기 또는 폭약의 오용에 의한 중죄 또는 경죄(제106조, 제207조)

을 예상했을 경우, 사실상 그런 범죄행위의 계획을 들은 사람 역시 통지의무를 가졌다. 그리고 통지의무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가족, 가까운 친인척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의무를 가졌다. 이러한 상황은 나치시대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는 가족간에 친구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가 깨지고 사상의 자유의 황폐화에 이르게 하는 가혹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여기서 파생되는 무고는 수많은 동독주민을 비참한 구금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고 심지어 일부에게는 자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중앙기록보존소 의미의 정치적 무고를 정리하면, 연방형법 제241조 a에 의하면²⁹ 고의적 밀고는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유발된 구속을 가져오는 경우에 특히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약 3000개의 정치적 무고사안은 연방형법 제241조의 구성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한 경우로 무고로 구속 상태에 이른 경우이다.³⁰

중앙기록보존소에 기록된 정치적 무고사안은 세밀한 조사를 통한 완벽한 증거와 함께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치적 무고의 기록은 밀고의 희생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건 한건의 증명은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록된 정치적 무고의 수는 정확한 통계치수를 위하여 기록보존소의 종사자가 국가안전부의 불법행위를 세밀히 조사하여 완벽한 증거를 통한 기록을 하려는 결과이다.

6. 탈영의 중죄 또는 경죄(제254조)

- (2) 또 무기는닉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은 자가 이를 지체없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 (3) 특히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4) 이러한 고발은 공안기구난 독일민주공화국 감찰의 사무소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²⁹ 연방형법 제241조 a <정치적 박해를 위한 제보>

- (1) 타인에 대한 고발이나 제보를 통하여, 그 타인이 정치적 박해를 받음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는 폭력적 또는 자의적 처분에 의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를 입거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직업적 또는 경제적 지위를 현저히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2) 타인에 관한 사실을 통지 또는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한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한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3)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타인에 관한 고발, 제보 또는 통지의 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그 행위가 제1항에서 기술한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기타 특히 중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10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³⁰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06.

3. 업무방식

중앙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의 발견과 그 자료화 그리고 보존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였다.

설립당시 중앙기록보존소는 소장과 2명의 업무담당직원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1962년 말 생소한 업무에 대한 익숙하지 못함과 예상치 못한 업무의 과다는 인원보충이 필수적이게 하였다. 그래서 중앙기록보존소의 근무직원은 7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임무의 심각함에 비하여 근무직원수가 7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앙기록보존소는 형사소송법상 의미의 검찰청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한편, 각주의 검찰들을 광범위하게 지도할 수 있어, 근무직원의 업무는 주로 자료의 기록과 보존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³¹

증거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발견과 그의 자료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필요하다면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증거자료의 수집가능성과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하면서 약화되었기 때문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접하자마자 즉각적인 기록의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³²

증거자료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서독으로 탈주한 동독주민의 증언에 의지하였으나, 동서독국경선에서 일어난 피난민의 추적사안 경우는 서독인의 진술도 기록하였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사건장소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사진촬영도 하였다.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대개 중앙기록보존소의 위임에 따른 주수사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동독 정치적 수감자의 입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었다. 증거자료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획득되었다.

첫째, 연방국경수비대의 상황보고서(Lagerberichte des Bundesgrenzschutzes)를 통해서 동서독국경지대에서 발생함으로써 초소근무자들에 의해 인지된 동독탈주자에 대한 동독국경수비대의 사살행위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둘째, 언론의 보고를 통해서, 즉 1973년부터 서독의 언론인은 동독 내에서 상주하며 특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주특파원이나 그 외에 동독 내에서

³¹ *Ibid.*, p. 180.

³²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 26.

활동한 언론인들을 통해서 인권침해사례의 수집이 가능했고,³³

셋째, 피해자나 증인에 의한 개인적 진술, 즉 중앙기록보존소를 방문한 동독주민에게서 직접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서독에 거주한 피해자의 친지나 친척 등을 통하여 동독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행위를 우회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넷째, 주 또는 연방기관에의 조회 또는 연방기관의 통지를 함으로써, 즉 내독간 형사사법 및 기관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RHG) 제15조에 따른 동독탈주자의 동독 법률에 따른 형 집행의 불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적 신청과 심리철차를 위한 관련 자료를 중앙기록보존소에 조회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중앙기록보존소가 주 최고검찰청과 관할행정청에의 동독 내 선고된 불법판결에 대한 사전 조회함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다섯째, 기센의 목록(Gießen Listen)을 통하여, 즉 동독탈주자와 추방자를 위한 기센 중앙긴급수용소(Zentrale Notaufnahmelager für DDR-Flüchtlinge und Übersiedler)에 수용된 동독탈주자와 추방자를 신문과정에서 언급된 인권침해행위를 수집하였고,³⁴

여섯째, 탈출군인의 신문과정에서 증언된 사격명령과 실패한 탈출기도 및 총격사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자료의 기록방식으로는 처음에부터 인명카드가 활용되었는바, 인명카드는 사건관련자의 역할에 따라, 예를 들어 형사책임이 있는 자, 증언자 등은 다른 색으로 구분된 카드함에 따로 보관되었다. 설립당시에는 인명카드의 작성에 종이카드가 사용되었고, 1977년부터는 전기를 이용하는 저장방식을 택하였으며, 1990년 초부터는 컴퓨터가 이용되고 있다.³⁵

³³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4.

³⁴ 신문은 특정한 설문양식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그 설문지에 피해자의 설명, 밀고자, 재판참가자, 교도소 등에서의 재판집행에 관여된 사람 등이 기재되어 중앙기록보존소로 넘어가 카드에 기록되었고, 동독에서 함께 구급되어 있던 사람들은 조사하여 이들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여 증인들의 신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p. 38~39,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6.

³⁵ Sauer · Plumeter, *der Salzgitter 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ueber Verbrechen im SED-Staat*, pp. 25~26.

Ⅲ. 중앙기록보존소의 효과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동보존소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탈북자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권침해가해자에게 수동적이거나 강력한 인권침해행위의 중지압박수단으로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통일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1. 인권침해가해자에 대한 행위중지압박수단

잘쓰기타의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정권의 국가적 범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의 보존을 상징함으로써 단순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문서보존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통일 당시 연방법무부 장관이었던 킨켈(Kinkel, Klaus)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는 가해자가 있다. 국가로서의 독일민주공화국은 소멸하지만 사람들은 남아있다. 과거 동독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로 직간접적으로 과거 동독의 체제불법이 과거청산의 대상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는데,³⁶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이미 통독이전에 사실상 이러한 동독의 정권담당자에게 인권침해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³⁷

실상 동독의 정권담당자는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동독의 정권담당자들은 동 보존소가 자신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로 느껴졌고,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적대자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묻어두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인권침해적 불법행위가 중앙기록보존소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동 보존소에 의하여 기록되어 문서화하여 보존되는 경우, 동 행위는 인권침해적 불법적인 처벌행위임을 확인시켜주게 되어 상당한 부담을 가졌다. 따라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앙기록보존소를 보복주의에 따른 기구로 보았고, 동보존소의 활동을 동독주권침해의 측면에서 동독내부사안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당연히 중앙기록보존소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동시에 중앙기록보존소의 종사자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응

³⁶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p. 68.

³⁷ 동일한 견해.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집 제1호 (2006.4), p. 301.

징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한 예로서 1962년에 이미 동독정부의 각료회의 의장은 베를린에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대조치를 취했었다.

1. 동독의 총검사(청)(Generalstaatsanwalt)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즉, 유엔현장에 기초해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독일전범자 군사재판소의 위상과 판결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동독정부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응징을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전담부서를 설립한다.

2. 이 부서는 그들 활동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에 대한 동독정권담당자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동보존소의 동독주민들을 위한 인권보호적 기능³⁸은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동독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에 직접적 강제적 재제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연방정부에게는 동보존소의 존재에서 잠재적 범죄행위자인 동독정권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³⁹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인권침해가해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자제토록 하여,⁴⁰ 동독의 인권침해환경의 심각성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⁴¹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게 있어서는 동독정권담당자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자행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중앙기록보존소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되었다.

2. 강력한 통일여지의 표현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치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는 연방정부가 분단국가에 대한 현실을 수동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지와 함께 차후에 ‘반드시’ 있게 될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적으로는 동독정부와 동독인에게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독일이 분단국가로 존재함을 인정하는데 고개를 끄떡이는) 국가에게 천명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한몫을

³⁸ 위의 글, p. 181.

³⁹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 167.

⁴⁰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p. 181.

⁴¹ 위의 글, p. 167.

담당함으로써 일조를 하였다⁴²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이 통독이후 동독정부의 인권침해행위에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증거자료를 수집·보관함으로써 독일이 재통일이 될 경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에 있다면, 이러한 독일의 (재)통일을 전제로 한 목적에서 동보관소가 독일주민의 강력한 통일 의지를 밝히는 간접적 징표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고려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국민의 통일 의지는 독일국민이 분단국가에 안주하게끔 하지 않았다. 때문에 동독정권에 의한 동서독의 분리정책은 인용되지 않았고, 동독정권담당자의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독일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었다. 이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마지막 동독의 수상인 드 메지에르 견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통독의 당연성의 하나로 “동독정부는 동독을 독일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과는 다른 외국국가임을 강조하였지만, 이 주장은 동독주민에게조차도 (거의)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은 통일되기 전에도 독일인사이에서는 비록 나라는 갈라져 있으나 문화적 유산은 하나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강했다”⁴³고 밝혔다. 즉 동독은 독일의 일부이고, 두개의 독일국민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독일 민족만 존재한다는 것이 독일국민에게 있어서는 참혹한 현실조차도 깨트릴 수 없는 엄연한 대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국민의 정서는 그대로 서독의 정치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의 필연성을 제공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은 독일국민의 통일 의지표현에 대한 정치적·법적 뒷받침으로 이해가능하다. 통일 전 연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당시의 동독정권의 독일국민인 동독주민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직접적·강제적 방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독 형사소송절차와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적 관할권의 결여 때문에 조사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통일 이전에도 불법월경자에 대한 동독 국경경비대의 사실행위를 반법치국가적·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과 기록보

⁴² 참조, 김규현, “독일의 ERFASSUNGSSTELLE,” p. 175; 윤여상·제성호에 의하면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동독주민의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유주의체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분단 극복의 당위성 및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p. 229.

⁴³ 박종화·드메지에르, “분단전 재산권 인정, 동독인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대답>,” 『월간중앙』 (1994.3), p. 336.

존을 위하여 1961년 11월 24일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에서 잘 알 수가 있다. 또한 통일 이전에도 불법월경자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한 바 있는 전 동독 국경경비대원 한케(Hanke)에게 살인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바도 있었다.⁴⁴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정한 처벌되어야 할 불법행위의 기준은 통일 후 과거청산의 기준과도 차이를 가지지 아니함으로써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 통일 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정치적 필요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 전부터의 법치국가에의 신념과 법치국가원칙에 어긋난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법의식의 발로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⁴⁵

IV.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설립의 의미

중앙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설립될 경우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는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서도 기대가능하다. 따라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존재에서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개선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1. 인권침해 대처기관

가. 탈북자의 인권침해 중지압력수단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그 명칭에서 알 수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기록·보존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인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를 검토했을 때, 북한정권담당자의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수동적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중지압박효과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는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에 “평화변영정

⁴⁴ 법무부,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pp. 95~96.

⁴⁵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55~156.

책”을 기조로 함으로써 특히 탈북자의 인권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입장⁴⁶에서 탈북자의 인권보호라는 당위성 강조에 일조하는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참여정부에게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공론화되면서 세계적인 주목도 받고 있는 만큼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UN인권위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대북한인권압력을 강화하면서 2003년, 2004년 및 2005년 등 3년에 걸쳐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⁴⁷ 아울러 2004년 제60차 UN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UN인권위원회와 UN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고, 2005년 제61차 UN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서는 임기를 1년 연장하였다.⁴⁸ 특히 UN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관인 위트 문타본 태국 출라롱콘대학 교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첫 보고서를 작성, 북한 인접국들에 대한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다.⁴⁹ 미국의 경우는 의회의 청문회,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를 통하여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⁵⁰

그 이유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기조로 하여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참여정부는

⁴⁶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참여정부의 탈북자 인권문제해결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⁴⁷ EU(유럽연합)은 대북한 인권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 바, EU는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이 UN인권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UN총회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2005년 12월 16일 이를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1~13.

⁴⁸ 위의 책, p. 11.

⁴⁹ 김영신, “탈북자를 통해 본 ‘나라같은’ 북한 인권상황<HRW 2005 인권보고서>,” p. 37; 문타본은 “인권6개안”을 발표하면서, ①북한당국의 인권조약 이행, ②특별보고관이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안 수용과 인권개선, ③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④남북한 당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⑤대북구호물자의 분배실태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⑥북한당국이 경제개발 계획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시킬 것 등을 촉구하였다. 『조선일보』, 2005년 11월 11일.

⁵⁰ 북한인권법에서는 미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조치를 담고있다. 첫째는 북한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혹은 개인을 지원하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달러까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경우 법률상의 문제를 정비하고 있다. 김수암,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21세기 동북아 정세와 북한 인권』, 최의철 박사정년 기념논총 (2006.3), pp. 497~498.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다른 대북정책과제와 연관하여 더불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사실 2006년 9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⁵¹ 탈북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어쨌든) 당위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하게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 원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⁵² 요컨대 이는 노대통령은 분단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타 국과는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서 다각적인 고려와 함께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무엇보다도 인권의 내용과 그 실현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진지한 고민을 담아 각자가 놓인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기를 요구해야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북한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북한문제의 경우도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분단체제 전체에 귀속하는 측면과 이 체제의 작동에 가담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각각의 책임에 해당하는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같은 견해를 보인다.⁵³ 이러한 인식은 노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대로 나타난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참여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이미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발효하자 당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표출되었다. 그에 의하면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전제, 북한과 화해와 접촉을 통한 ‘작은 발걸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4원칙을 제시하였는바,

첫째, 인권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다.

둘째,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성 인정,

⁵¹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²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³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06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학술회의』 (2006.9), p. 52.

셋째, 평화번영정책을 통한 긴장완화에 따른 북한인권의 점진적·실질적 개선도도, 넷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를 강조하였다.⁵⁴ 이 4원칙은 구체적으로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들어 대북 제재에 나서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작정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참여정부의 의지 표출과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만의 특수한 접근법 시도로 이어졌다.⁵⁵ 그 예로서 참여정부는 2004년의 제60차 UN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시 (고심한 끝에) 불참하거나 기권하였다가 최근 북핵사태가 야기된 이후 2006년 11월 18일에서야 비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딜레마 속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침해사태의 경우, 참여정부는 난민 협약 등 국제법적 관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다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체류 묵인 및 강제송환 중단 등 탈북자에 대한 특별배려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다.⁵⁶

그런데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많은 비난이 따랐다. 이 비난에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평화번영정책”의 기초 하에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적 틀 내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고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대처방안을 추진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⁵⁷ 하지만 “평화번영정책”에서 탈북자에 자행되는 반 인권적 사안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의 한

⁵⁴ 위의 글, p. 57.

⁵⁵ 『중앙일보』, 2006년 9월 13일.

⁵⁶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찌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p. 39.

⁵⁷ 특히 참여정부의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기권은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당시 김문수 국회의원은 “북한인권문제는 자국민 보호의 문제이며, 통일의 문제이다. 당연히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인권개선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작 동포인 우리는 조용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정권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정략적 목적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문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자,” pp. 189~191). 그리고 기권표의 행사가 유감스러운 것으로, 타 국민도 아닌 바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 된 후 도래할 통일 국가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같은 동족국가인 한국만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p. 221). 그 외에 조선일보 2006년 10월 4일자에 보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기권한 것을 이유로 참여정부의 외무부 장관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기사로 쓰고 있다.

계성은, 그 만큼이나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설립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즉 중앙기록보존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수동적이거나 적극적인 북한정권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변영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서도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통하여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사안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공개되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권침해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무척이나 두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인권침해행위의 자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기여

흔히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경우 협의와 광의의 2가지 개념⁵⁸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먼저 북한인권을 협의의 개념에서 이해했을 경우에 탈북자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파급효과는 북한 내 주민에 대한 북한정권의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행위에 게 까지도 경종을 울릴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 내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형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⁵⁹ 실제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

⁵⁸ 김수암은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에서 북한인권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인권을 북한 내 주민의 인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협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인권을 북한 내 주민의 인권상황을 포함하여 해외 체류 탈북자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간의 인도주의사안을 포함하는 개념을 광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김수암, 위의 글, pp. 473~474). 하지만 여기서는 논문의 성격상 협의의 개념으로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그 외 탈북자와 상호 연계된 모든 형태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광의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북한 내 주민의 인권상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의 인권상황은 협의의 개념과 대비되는 광의의 개념에 속한다.

⁵⁹ 위의 글, p. 474.

는 인권침해의 유형은 전 북한 여광무역 사장인 김덕홍씨의 직간접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서 경제생활에서의 인권유린 행위, 정치생활에서의 인권유린, 사상문화 생활에서의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⁶⁰

이에 따라 탈북자의 탈북동기에 있어서 이미 북한 내 주민의 인권문제와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임무영역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사안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보존소의 주목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만큼 북한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통일준비 기관

남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분단체제가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는 현재 통일과정에서 대두되는 남한사회의 문제든 북한사회의 문제든 분단체제를 떠나서 규명할 수 없다.⁶¹ 그런 만큼 탈북자의 인권유린상황이 남북이 분단됨으로서 나타난 우리민족의 고통이라면 탈북자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남북이 다시금 재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모델로 고려되고 있는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효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에서도 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통일준비 기관으로 각인될 수가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⁶² 북한인권보존소를 설립하자고 주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의하면, 북한인권보존소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리고 통일 후에도 반인권적 범죄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북한의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하여는 강한 경고가 될 것이다”⁶³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인권보존소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통일을 대비한 준비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제성호교수는 “북한인권개선정책이 통일정책의 중요한 일부이며, 국가는

⁶⁰ 김덕홍,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 pp. 205~218에서 요약.

⁶¹ 백낙청,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남남갈등에서 한반도를 선진사회로,” p. 52.

⁶²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 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p. 229.

⁶³ 김문수,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p. 191.

남한과 북한사이의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인도적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⁶⁴ 통일정책과 북한인권개선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탈북자 인권개선방안으로서 인식되는 한 당연히 통일의지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이미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기록보존소가 동서독의 분단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가 현재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한다.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또 하나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던 독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던 동독주민의 동독탈주에 이어서 분단의 상징인 베르린장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통일독일은 현실로 나타났었던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그 중에서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후 16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의 비참한 운명은 동독 공산정권시절에 여행의 자유 억압과 가난 때문에 일어난 동독의 게르만 엑소더스와 본질이 같다는데 많은 공감을 가져다준다.⁶⁵ 그런 만큼 독일연방정부가 동서독 분단 이후 재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취하였던 적절한 대처와 방안은 남북의 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그 중에서 중앙기록보존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독정권의 범법행위를 수집·기록·보존함으로써 통독 전에는 (단순히) 문서보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담당자의 인권침해행위의 수축에 대한 수동적이지만 적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통일 후에는 범법행위의 형사소추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독일의 통일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관이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기록보존소가 동서독의 재결합에서 보여주는 위치를 고려해 볼

⁶⁴ 제성호, “북한 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입법방향,”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토론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5.5), p. 23.

⁶⁵ 주섭일, 위의 글, p. 51.

때, 그와 같은 역할을 남북통일과정에서도 해주는 것이 기대가능한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가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로 “평화번영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적 틀 내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고려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대처방안을 추진하기를 자제하고 있는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